

#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)
-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명문화함(안 제39조의3제1항제5호 신설)
-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·사용 근거를 마련하고,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5조의2 신설 등)
-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하며,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(안 제41조제5항, 제79조의2,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등)

## II. 검토의견

### □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과 일시사용 등(안 제45조의2 신설)

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·측량, 철도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,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함.

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출입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로 조사·측량 및 시설 유지·관리를 위해 타인의 건물 내부까지 출입 또는 사용할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하며, 이는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<sup>1)</sup>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.

현행 타 입법례는 토지와 건물의 출입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.

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한 「도로법」 제81조<sup>2)</sup>, 하천법 제75조<sup>3)</sup>는 조사·

---

1) 「헌법」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
2) 「도로법」 제81조(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)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, 도로에 대한 조사·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,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, 특히 필요하면 입목·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·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(住居)나 경계표·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
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측량을 위한 출입 대상을 ‘토지’로 제한하고 있으며, ‘건물’ 출입을 허용하는 입법례<sup>4)</sup>은 인명이나 물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특수 상황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시설 유지·관리를 이유로 건물 출입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제약으로서 사회통념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.

따라서,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의 대상에서 건물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.

### [ 안 제45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]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45조의2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출입과 사용 등) ① 철도 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 | 제45조의2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|

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- 3) 「하천법」 제75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하천관리청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·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·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·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, 하천에 관한 조사·측량,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일출 전·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4) 「민사집행법」 제82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69조, 「집합건물법」 제59조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

하는 자는 철도보호지  
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 
조사·측량 또는 철도  
시설의 유지·관리를  
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 
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  
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 
재료적치장, 통로 또는  
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 
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 
경우에는 죽목·토석,  
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 
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 
토지나 건물에 출입하  
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 
날의 3일 전까지 그 토  
지나 건물의 소유자·  
점유자 또는 관리인에  
게 그 사실을 알려야  
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 
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  
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  
시 사용하거나 죽목·  
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 
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 
자는 미리 그 소유자·  
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 
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필요한 경우 -----  
- 토지에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있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토지에 -----  
-----  
----- 토  
지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개정안과 동일)

만, 그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일출 전·일몰 후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전자등 또는 철도운전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도운전자등 또는 철도운전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

④ -----  
----- 토지 점유자의  
-----  
-----  
----- 토지에 -----  
-----.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당 행  
위의 내용을 국토교통  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
따라 소유자·점유자  
·관리인 또는 관할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p><u>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⑦ <u>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⑧ <u>제7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| <p><u>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토지의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⑦ -----<br/><u>토지에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⑧ (개정안과 같음)</p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